

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3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
신청인	성명(대표자)	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상호(법인명)			전화번호	
	주소				
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	성명(대표자)				
	상호(법인명)			전화번호	
	주소				
피신청인	성명(대표자)				
	상호(법인명)			전화번호	
	주소				

조정을 받으려는 사항

※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(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) 1부 2.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) 각 1부 3.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.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.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	조정 신청 수수료 (국토교통부장관 이 별도로 고시하 는 금액)
------	---	--

